

# ADVENTURE

Online Travel Agent

## 여행 수배 계약 약관

---

본 약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한국어판입니다.

본 약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본어 원문이 우선됩니다.

# 여행 수배 계약 약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적용범위)

1.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 수배 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해집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약관보다 특약이 우선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여행 수배 계약」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요청에 의해 여행자가 희망하는 교통, 숙박등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 (이하 「여행서비스」라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일본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지칭합니다.
3. 이 약관에서 「여행 요금」이란,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 숙박료 그외 교통, 숙박 시설등에 지불해야 할 비용 및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변경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를 제외)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한 신용카드 회사 (이하 「제휴회사」라한다)의 카드 회원과 전화, 우편, 팩스등의 통신수단등의 신청으로 체결된 여행 수배 계약입니다.  
당사가 여행 업무 대행 계약에 근거한 여행요금등의 채권 또는 채무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함으로써 여행자가 승낙하고,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 요금등을 제 16 조 제 2 항 또는 제 5 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서의 결제를 전제로 한 내용이 여행 수배계약입니다.
5. 이 약관에서 「전자 승낙 통지」란,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시, 정보 통신기술 이용방법중에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 팩스,전화등 기계적 장치 (이하 「전자 계산기등」이라한다) 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등을 접속한 전기 통신 회로를 통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신용카드 결제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여행 업무 대행 계약에 근거한 여행요금등의 지불일 또는 환불일을 말합니다.

### 제 3 조 (수배 의무 완수)

당사가 관리자의 주의하여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였을때 여행수배 계약에 근거하여 당사의 의무는 완수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부적당한 조건등의 이유로, 교통, 숙박 시설등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체결을 못했을 경우라도, 당사가 의무를 완수하였을 시는, 여행자는 당사에게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 (이하 「취급수수료」 라한다)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가 교통, 숙박시설등 여행서비스의 제공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내용을 통지한 날이 카드 결제일입니다.

### 제 4 조 (여행 업무 대행)

당사는 여행수배 계약 이행시 여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국내 또는 해외의 다른 여행업자, 그외 보조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 2 장 계약 성립

### 제 5 조 (계약 신청)

1. 당사와 여행수배를 계약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후, 당사가 따로 정한 금액의 신청금과 같이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는 전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회원번호 및 희망하는 여행서비스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 1 항의 신청금은, 여행요금, 취소 수수료, 그외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 제 6 조 (계약 체결 거절)

당사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수배 계약체결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 불가등으로, 여행요금등의 지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제휴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준하여 결제 하지 못할 경우
- (2) 여행자가 조직 폭력단원 및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등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될때
-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해서 폭력적인 요구행동, 부당한 요구행동, 협박적인 언동 및 폭력을 휘둘렀을 때
-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 (5) 그외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때

### 제 7 조 (계약 성립시기)

1. 여행 수배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 5 조 제 1 항의 신청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사가 제 5 조 제 2 항의 신청에 대한 승낙을 통지한 시점에서 성립합니다. 단, 전자 승낙 통지형태의 경우 해당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8 조 (계약 성립의 특별 조항)

1. 당사는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서면으로 특약을 맺으므로써 신청금을 받지않고 승낙으로만 여행수배 계약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전 항의 경우, 여행 수배 계약 성립 시기를 전 항의 서면에서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제 9 조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별 조항)

1. 당사는 제 5 조 제 1 항 및 전 조 제 1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교통 서비스 또는 숙박서비스 제공에 관한 여행 수배 계약에 있어서, 여행 요금 수령후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를 기재한 문서 교부를 요청시 구두에 의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수배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한 시점에서 성립됩니다.

### 제 10 조 (계약서)

1. 당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후, 여행자에게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요금, 그외 여행조건 및 당사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계약서」라 한다)을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여행 서비스에 있어서 승차권 종류, 숙박권 그외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시는 해당 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2. 전 항 본문의 계약서 교부시 당사의 책임으로 여행자에게 제공될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계약서 기재에 따릅니다.

### 제 11 조 (정보통신 기술 이용방법)

1. 당사는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여행수배 계약의 계약체결시에 여행자에게 교부한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요금 그외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교부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여행자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보관할수 없는 경우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보관 된 파일에 기록되고 (해당 여행자에게만 제공됨), 여행자가 확인한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3 장 계약 변경 및 해제

### 제 12 조 (계약 내용 변경)

1. 여행자는 당사에 대해서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그외 여행 수배 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2. 전 항의 여행자의 요청에 의해 여행수배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여행자는 예약 취소시에 교통, 숙박시설등에 지불해야 하는 취소 수수료, 위약금 그외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당사에 대해서는 당사 소정의 변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 변경에 의해 생기는 여행 요금의 증감은 여행자 부담이 됩니다.

### 제 13 조 (여행자의 자발적 해제)

1. 여행자는 여행수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준하여 여행수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자는 이미 제공 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 또는 제공 받지 못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 수수료, 위약금 그외 교통 숙박시설등에 납입해야 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 대해서는 당사 소정의 변경 수수료 및 취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제 14 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1. 당사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수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 불가등으로, 여행요금등의 지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제휴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준하여 결제하지 못할 경우.
  - (3) 여행자가 제 6조 제 2호에서 제 4호까지의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2. 전 항의 규정에 준하여 여행수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자는 제공 받지 못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 수수료, 위약금 그외 교통 숙박시설등에 납입해야 할 비용의 부담, 당사에 대해서는 당사 소정의 변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제 15 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1. 여행자는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여행 수배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준하여 여행 수배 계약을 해제할 경우는,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제공 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로써 교통 숙박시설등에 지불한 비용 또는 납입해야할 비용을 제외한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3. 전 항의 규정은 당사에 대한 여행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 4 장 여행 요금

### 제 16 조 (여행 요금)

1. 여행자는 여행출발일 전에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통신 계약 체결한 후에, 당사는 제휴회사 신용카드로 여행자의 서명없이 여행요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일은 당사가 확정된 여행 서비스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이 됩니다.
3. 당사는 여행 출발전에, 교통 숙박시설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 변동 그외 이유로 여행 요금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해당 여행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 요금의 증감은 여행자 부담이 됩니다.
5.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 계약체결에 있어서 제 3 장 또는 제 4 장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의 서명없이 여행요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카드 결제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이 됩니다.  
단, 제 14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여행 수배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 및 지불 방법으로 지불 금액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17 조 (여행 요금의 정산)

1.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 숙박시설등에 지불한 비용중 여행자 부담 금액 및 취급 수수료 (이하 「정산 여행 요금」이라 한다)와 이미 수령한 여행 요금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여행 종료후 다음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한 대로 신속하게 여행 요금을 정산합니다.
2. 정산 여행 요금이 이미 수령한 금액을 넘을 경우는, 여행자는 당사에 그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정산 여행 요금이 이미 수령한 금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 제 5 장 단체·그룹 계약

### 제 18 조 (단체·그룹 계약)

당사는 같은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책임을 맡은 대표자 (이하 「계약 책임자」라 한다)를 정해 신청한 여행 수배 계약 체결에 있어서 본 장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 19 조 (계약 책임자)**

1.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에게 그 단체 · 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여행 수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전면적으로 위임하며, 해당 단체 · 그룹에 관련된 여행업무 거래 및 제 22 조 제 1 항의 업무는 해당 계약 책임자와 진행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구성원의 명단을 제출 또한 인원수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구성원과의 사이의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 · 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 출발후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 **제 20 조 (계약 성립의 특별 조항)**

1.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여행 수배 체결에 있어서,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신청금을 받지않고 여행수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청금을 받지않고 여행 수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당사는 계약책임자에게 명확히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며, 서면을 교부한 시점에 여행 수배 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 21 조 (구성원의 변경)**

1.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원의 변경 신청을 요구시에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2. 전 항의 변경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감 및 변경시 필요한 비용은 구성원 부담이 됩니다.

### **제 22 조 (여행 인솔 서비스)**

1. 당사는 계약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단체 · 그룹에 인솔자를 동행시켜서 여행 인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여행 인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여행 일정에 따라 단체 · 그룹 활동에 안전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여행 인솔 서비스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정합니다.
4. 당사가 여행 인솔 서비스를 제공할시 계약 책임자는 당사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제 6 장 책 임

### 제 23 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제 4 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행을 의뢰한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단,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교통, 숙박시설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정부의 명령, 그외 당사 및 당사의 사용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전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관한 제 1 항의 손해에 대해서 동 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일본 국내여행은 14 일 이내에, 해외여행은 21 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1인당 15 만엔을 한도로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 배상합니다.

### 제 24 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체결시, 당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 의무 그외 계약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여행출발후,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만일 계약서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당사, 당사의 사용인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 7 장 보 험 가 입 등

### 제 25 조 (보험 가입등)

1. 당사는 사단법인 일본여행업 협회(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3-3)의 회원사입니다.
2. 당사와 여행 수배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 전 항의 사단법인 일본여행업 협회에 가입한 보험금 최대 1억 3천만엔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단법인 일본여행업 협회에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동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영업 보증금은 예치하지 않습니다.